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공사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무 등) ① 공사계약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

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 ① 수급인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한 후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주어야 한다. 다만, 우리 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구·사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6조(채불방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우리 구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채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채불 민원 발생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제7조(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수급인은 우리 구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8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① 우리 구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이 불가하다.
- ②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 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채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호의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4. . .

내용 확인자 : ○○○주식회사 ○○○ (인)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 약 상대자	해 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 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 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